

# 국민과 해양경찰이 만드는 깨끗한 바다

강진성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

우리나라에 해양경찰(이하 해경)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해경의 주요업무중 하나가 해양오염관리라는 사실은 국민 일부만이 알고 있는 것 같다. 선박사고로 발생하는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HNS)의 유출시 오염 방제작업, 태풍 또는 홍수로 발생하는 해안쓰레기 정화활동,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해양환경 업무를 통하여 국민모두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I. 깨끗한 바다만들기!!!

### 1. 해양경찰의 해양환경 업무

현재 해경의 해양환경 관련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해양오염사고 감시 및 예방업무로 「해양쓰레기 ZERO 운동」, 「청소년 해양환경 보전의식 함양 교육」, 「선박, 해양시설 출입검사」 등 수행업무가 다양하고, 둘째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선박해난사고(전복, 충돌, 좌초, 화재 등)시 유류오염 또는 위험·유해물질(HNS)의 신속한 방제대비 대응체제 구축과 방제 조치 수행, 셋째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적정관리를 위하여 배출업체와 위탁처리업체 지도·단속, 그리고 해양배출량 조정업무, 해양배출관리시스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넷째로는 해양오염물질 감시·분석업무로 해상에 유출된 기름, 해양배출 폐기물 성분분석 및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신(新)규제 오염물질의 연구·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업무 중 현재 해경이 “깨끗한 바다 만들기” 정책은 폐기물관리업무와 분석업무를 발판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무다.

### 2. 해양배출 폐기물 현황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시작되면서 꾸준한 증가로 현재는 2006년 기준으로 해양배출량이 881만 톤(t)에 달한다는 점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양배출량 통계상 상위그룹에 속하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는데 해양배출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일반국민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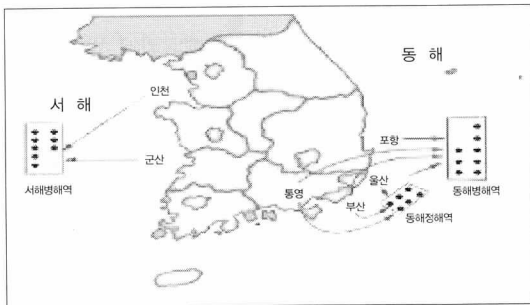
폐기물해양배출은 서해와 동해에 배출해역(표-1)을 지정하여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35조)을 지정해 합법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초기 허수처리오니, 축산폐수, 폐수처리오니, 준설토사 등이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04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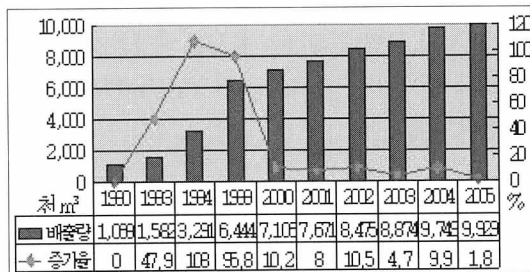
독도의 일출

터는 축산폐수와 음식물처리폐수의 급격한 증가로 993만 톤(2005년 기준)을 기록했다.(표-2)



구분	서해병 해역	동해병 해역	동해정 해역
해역면적	3,165km <sup>2</sup>	3,700km <sup>2</sup>	1,616km <sup>2</sup>
배출위치	군산서방 약 200km	포항동방 약 125km	울산남동방 약 63km
수심	80m	200~2,000m	150m

[표-1]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가능해역



[표-2] 연도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물론 정부에서 런던협약 96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해양배출금지 국제협약 이행의 국가적과제를 대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준비·시행하였지만, 정책홍보의 미비 및 육상에서의 폐기물처리비용(소각, 매립, 재활용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부담, 생활주변 환경문제에 민감한 국민의식은 해양배출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 3. 해양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

해양배출량의 증가는 폐기물 배출해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머리카라 등 혐잡물 및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언론보도(2005.11.6. KBS스페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제고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현재 해경에서는 배출량감축 방안으로 법적규제 강화,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불법 해양투기 지도·단속 강화, 관련업체와 간담회 및 홍보자료 발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나아가서 배출해역 친환경적 관리방안으로 정기적인 오염도조사(년4회), 휴식년제(배출해역 변경)를 시행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해양배출 폐기물 분석업무와 관련해서는 법률개

정을 통해 2008년 2월 22일부터는 분석항목을 현행 14항목을 25항목(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별표16)으로 확대적용하고, 용출시험법을 함유량시험법으로 전환하여 규제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분석대상 폐기물을 전체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탁처리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정 조건의 분석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현지 실사를 통한 분석능력 확인을 거쳐 “해양배출 폐기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표-3. 2006기준)

지정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지정항목
법정기관	환경관리공단	032)560-2203	일반/특수
법정기관	한국해양연구원	031)400-6182	일반/특수
제06-1호	(주)명성과학 기술연구원	02)439-3999	일반
제06-2호	(주)이화환경	053)555-2126	일반
제06-3호	(주)한국이앤씨	053)563-6806	일반
제06-4호	(주)혜성환경	031)473-3413	일반
제06-5호	(주)원일화학엔vironment	031)498-3390	일반/특수
제06-6호	(주)랩프런티어	031)244-9162	일반/특수
제06-7호	(주)청룡환경	02)851-3811	일반
제06-8호	(주)산업공해연구소	02)522-7545	일반
제06-9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0	일반
제06-10호	전북대 공동실험실습관	063)270-3562	일반/특수
제06-11호	FTI시험연구원	02)3299-8081	일반

[표-3]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현황

## II. 국민이 만드는 깨끗한 해양환경

2006년은 그간의 배출량감축 노력으로 결실(약

881만 톤)을 맺은 원년이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고 험난하다.

2011년까지 400만 톤으로 감축하려는 해경의 정책은 관계기관, 시·군 지자체, 관련업체간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피해 갈 수 없는 숙제라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

해결책을 국민모두가 제시 할 수는 없지만 빠른 해결을 위한 방법은 있다. 바로 관심이다.

관심이 여론이고 여론이 곧 문제해결의 열쇠이다.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또는 일부분도 연관된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루도 바다환경과 떨어져서 생활하기가 힘들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하루 세끼식사에서 해산물이 빠졌는지? 비단 해경의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노력이 아니더라도, 국제협약 이행의 당면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고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은가!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어패류의 섭취와 혼탁하고 냄새나지 않는 깨끗한 바다에서의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에 대한 예방에 힘쓰고, 해양배출 폐기물관련자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바다여행객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법과 제도에 위배되고 그로인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닌 자신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자각만이 지킬 수 있는 실천사항일 것이다.

이제부터 국민과 해경은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뛰는 동료이고 환경인(還境人)이 되어야 한다. ◀

정기구독 문의

Tel. 02-852-2291